# 소화설비규정 소개

김 영 욱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 1. 머리말

보험의 본래 기능이 우연적 사건에 기인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긴 하지만 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고의 미연방지 대책과 또한 사고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것의 경감을 시도하는 모든 활동도 개별 보험계약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사업자 측면, 국가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손해방지 대책은 손해발생의 감소를 장려하는 손해예방(loss prevention)과 발생된 손해를 경감(loss reduction)하려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요율산정에는 이러한 손해방지를 장려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로 시도되고 있는데 화재보험에서 스프링클러 등 화재소방시설을 갖춘 경우 또는 양질의 내구재 시설물에 대하여는 할인요율을 실시하고, 해상보험에서도 적하지침기 탑재 선박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화물적재상태에 따른 당해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난사고의 미연방지차원에서 선박 자체의 보험과 적재화물장치나 충격완화장치의 성능여하에 따라 요율의 할인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성과요율제도(merit rates plan)의 하나인 예정요율제도(schedule rating plan) 등에서 요율산정시 사전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제반 사고방지 활동의 결과, 사고발생빈도(loss frequency) 및 심도(loss severity)의 저하는 양호한 실적손해의 결과를 가져와 경험요율제도(experience rating or prospective experience rating)나 소급요율제도(retrospective or retrospective experience rating)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또한 요율이 손해방지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보험계약법상 또는 약관규정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지우고 있는 "손해방지의무"의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즉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필요 또

① 이 할인은 초기 소화설비를 병설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상기 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새로이 검사를 받아야 이 할인을 할 수 있다.
③ 2종 이상의 소화설비가 병설된 경우, 이들 할인율의 합계 또는 소화설비 추가할인율과의 합산할인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소화설비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할인특별약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포소화설비의 할인율은 소화설비규정에서 정한 포소화설비 할인율표에 의한다.
⑥ 동력소방펌프 중 소방자동차의 할인율 적용대상은 1구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공업단지내에서 공동으로 출자설비한 소방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출자자의 구내 모두를 할인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표 1〉 소화설비 할인율표

| 소화설비의 종류 | | | | 할인율 |
|---|---|---|---|---|
| 1 | 옥외소화전설비 | | 갑 | 기본요율의 15% |
| | | | 을 | 〃 12% |
| | | | 병 | 〃 8% |
| 2 | 옥내소화전설비 | | 갑 | 〃 10% |
| | | | 을 | 〃 8% |
| | | | 병 | 〃 5% |
| 3 | 가반식동력소방펌프 | 소방자동차 | | 〃 15% |
| | | 기타 | | 〃 8% |
| 4 | 자동화재경보설비 | | | 〃 8% |
| 5 | 자동화재속보설비 | | | 〃 5% |
| 6 | 스크링클러설비 | 1 | 모든 시설이 규정에 적합할 때 | 〃 60% |
| | | 2 | 미달규정의 수가 1개일 때 | 〃 50% |
| | | | 〃 2개일 때 | 〃 40% |
| | | | 〃 3개일 때 | 〃 30% |
| | | | 〃 4개일 때 | 〃 20% |
| | | | 〃 5개 이상일 때 | 〃 15% |
| | | 3 | 상기 1 및 2 이외에 유효할 때 | 〃 10% |
| 7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전역방출방식 | 자동 | 〃 20% |
| | | | 수동 | 〃 10% |
| | | 국소방출방식 | | 〃 8% |
| | | 호스·노즐방식 | | 〃 5% |
| 8 | 포소화설비 | | | 〃 5~18% |
| 9 | 할론 1301 소화설비 | 전역방출방식 | 자동 | 〃 20% |
| | | | 수동 | 〃 10% |
| | | 국소방출방식 | | 〃 8% |
| | | 호스·노즐방식 | | 〃 5% |

① 소화기는 소화설비규정의 초기소화설비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옥내·외 소화전설비, 자동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는 소화설비규정에 의거 할인율을 적용받는 물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이외의 조건은 소화설비규정에 따른다.

〈표 2〉 소화설비 추가할인율표

| 소화설비의 종류 | | 주요 구성품 | 추가할인율 |
|---|---|---|---|
| 0 | 소화기 | — | 기본요율의 3% |
| 1 | 옥외소화전 | 호스, 노즐 | 적용할인율의(주)의 20% |
| 2 | 옥내소화전 | 호스, 노즐 | 적용할인율의(주)의 20% |
| 4 | 자동화재경보설비 | 감지기 | 적용할인율(주)의 20% |
| | | 수신기 | 적용할인율(주)의 15% |
| | | 발신기 | 적용할인율(주)의 5% |
| 6 | 스프링클러 | 헤드 | 적용할인율(주)의 15% |
| 8 | 포소화설비 | 포소화약제 | 적용할인율(주)의 10% |

(주) 적용할인율이란 소화설비할인을 적용한 할인율을 말한다.

는 유익한 비용은 당해 보험에서 보상되는 손해에 부가해서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는 그것을 장려하는 공익적 이유와 또한 보험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바, 이는 바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요율산정상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 2. 화재보험요율서와 소화설비규정

위와 같은 손해예방과 발생된 손해를 경감시키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현행 화재보험요율서에서는 소화설비규정을 두어 보험의 목적에 대한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소화설비규정의 개요를 살펴보면,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소화설비규정에 의거 소화설비 할인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그 수용동산 및 기타 특히 정한 물건에 대하여 소화설비할인을 한다. 이 경우 소화설비할인검사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며,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소화설비할인현황(동 소화설비 및 그 건물에 대한 사항)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소화설비규정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표 1〉의 소화설비 할인율에 의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3〉 포소화설비 할인율표

| 설비의 종류 | | | 할인율 | |
|---|---|---|---|---|
| | | | 단독으로 설치된 경우 | 옥외포노즐이 병설된 경우[1] |
| 1 | 고정포 방출구[2] | 고정설비 | 기본요율의 15% | 기본요율의 18% |
| | | 반고정설비 | 기본요율의 10% | 기본요율의 13% |
| 2 | 포헤드 설비 Ⅰ | 자동 | 기본요율의 15% | 기본요율의 18% |
| | | 수동 | 기본요율의 10% | 기본요율의 13% |
| | 포헤드설비 Ⅱ(자동) | | 기본요율의 15% | 기본요율의 18% |
| 3 | 옥외포노즐설비[3] | | 기본요율의 5% | — |
| 4 | 옥내포노즐설비 | | 기본요율의 5% | — |

(주) 1. 옥외포노즐이 병설된 경우라 함은 고정포방출구설비, 포헤드 설비 Ⅰ, Ⅱ에 옥외포노즐설비인 옥외포소화전 또는 화학소방 자동차가 병설된 경우를 말한다.

2. 고정포방출구설비에 병설된 옥외포노즐설비(보조용)는 단독으로 할인할 수 없다.

3. 옥외포소화전과 화학소방자동차가 병설된 경우의 할인율은 8%로 한다.

이 경우의 적용상의 유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다.

또한 소화기 및 소화설비의 주요구성 부품을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의 인증품(FILK인증품)으로 시설하였을 경우에는 건물, 그 수용동산 및 특히 정한 것에 대하여 〈표 2〉의 소화설비 추가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의 적용상의 유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다.

또한 포소화설비 할인에 대하여는 〈표 1〉에서 5~18%로 정하여진 것을 소화설비규정(별책)에서 이를 〈표 3〉과 같이 구체화시켰다.

〈표 4〉 소화설비규정 주요 개정내용(1996. 10. 1)

**1. 자동화재경보설비**

- 소방법의 주요내용과 일치시킴.
  - 감지기의 종류별 설치기준
  - 중계기, 수신기, 음향장치, 발신기, 전원의 설치기준
- 연기감지기 설치기준의 보완(NFPA CODE를 준용)
  - 전산실, 제어실 등의 높임바닥(ACCESS FLOOR)의 내부
  - 감지기는 벽 또는 보(깊이 20m 초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부칙규정 내용 보완
  - 작동불량시 수동경보설비 기능도 불량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함.
  - R형 수신기 및 중계기가 설치되고 감지기가 전 건물에 설치되어 경보기능을 하는 경우 자동소화설비와 연동되어 있더라도 자동화재탐지설비 기능을 인정하여 할인율을 적용

**2. 자동화재속보설비**

- 현행의 주요규정 유지
- 자동화재속보기의 부품 및 배선용 자재의 검정기준규정 개정
- 자동속보기의 전면에 있는 스위치 등의 조작부의 설치위치 변경

**3. 소화전설비규정**

- 옥내외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소화펌프의 규정을 신설함.

**4.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 초고층아파트(16층) 소방법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위험급별 기준을 변경함.
- 1차 급수원의 충압펌프의 기준을 현실화
- 측벽형 헤드의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표기함.
- 시험밸브의 내용 및 관경을 공정규격에 일치시킴.
- 시험밸브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

**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고압저장용기의 충전비에 대한 용어정리
- 이산화탄소의 충전량에 대한 용어 보완

참고로 소화설비할인조사의뢰서(양식)은 〈표 5〉와 같다.

### 3. 소화설비규정 개정 경과

〈표 6〉에서 보듯이 소화설비규정은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후 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현실성 결여와 적용상의 불합리성이 노출되어 전반적으로 이를 보완하고 소방법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1996년 4월부터 보험개발원과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협의하고 1996년 8월에 원보사(쌍용, 제일, 삼성, LG)가 참여한 작업반에서 검토, 업계 위험관리팀장 회의에 부의 통과하여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5〉 소화설비할인조사의뢰서(양식)

소화설비할인조사의뢰서

년 월 일

신청자명 ㊞

한국화재보험협회 귀중

아래 물건에 대하여 소화설비 할인조사를 의뢰합니다.

1. 소유자명 :
2. 물 건 명 :
3. 소 재 지 :
4. 물건종별 : 일반, 공장, 창고, 주택(업종 : )
5. 소화설비의 종류 :
6. 조사실시희망일 :
7. 건물규모 :

〈표 6〉 소화설비규정 변경표

| | |
|---|---|
| No. 1 초기소화설비 규정 | 1967. 9.14 제정(재이보 1223-1645) |
| | 1980.12.23 개정(보이 1234-1200) |
| No. 2 소화전설비규정 | 1967. 9.14 제정(재이보 1223-1645) |
| | 1980.12.23 개정(보이 1234-1200) |
| | 1982. 5. 7 개정(심의이 520-1884) |
| | 1995.10.16 개정(손보 302) |
| | 1996.10. 1 개정(생손 447) |
| No. 3 동력소방펌프설비 규정 | 1967. 9.14 제정(재이보 1223-1645) |
| | 1992. 6. 1 개정(가계 19호) |
| No. 4 자동화재경보설비 규정 | 1967. 9.14 제정(재이보 1223-1645) |
| | 1982. 5. 7 개정(심의이 1884) |
| | 1996.10. 1 개정(생손 447) |
| No. 5 스프링클러설비 규정 | 1972. 1. 1 제정 |
| | 1977. 9.14 개정 |
| | 1983. 4. 4 개정(심의이 520-1524) |
| | 1992. 6. 1 개정(가계 19호) |
| | 1996.10. 1 개정(생손 447) |
| No. 6 자동화재속보설비 규정 | 1977. 7.27 제정(보험 1223-1013) |
| | 1996.10. 1 개정(생손 447) |
| No. 7 포소화설비 규정 | 1977. 7.27 제정(보험 1233-1013) |
| | 1986.12.27 개정(손심 520-9073) |
| | 1994. 3.17 개정(가계 397) |
| No. 8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규정 | 1983. 6.28 제정(심의이 520-3100) |
| | 1994. 3.17 개정(가계 397) |
| | 1996.10. 1 개정(생손 447) |
| No. 9 할론 1301 소화설비 규정 | 1984.10. 2 제정(심의이 520-6064) |
| | 1995.10.16 개정(손보 302) |

### 4. 맺는 말

이상에서 손해예방과 발생된 손해를 경감하려는 활동의 일환으로써 소화설비할인규정을 살펴보았는 바 향후 보다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소화설비규정 및 그 할인율이 손해방지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한 관련기관들의 보다 깊은 연구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업무가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사회의 방재활동에도 일익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